

-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-

조례 심사보고서

○ 일 시 : 2022. 12. 15.(목) 10:00

○ 장 소 : 본회의장

○ 안 건

-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회 운영위원회

(위원장 유재호)

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. 11.

나. 발 의 자 : 김미영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22. 11. 24.

라. 상정일자 :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2년 11월 24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김미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한 제9대 화성시의회 연도별 의원 월정수당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골자

- 연도별 월정수당 금액에 관한 사항 (안 별표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화성시 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, 의결(2022. 10. 14.)한 제9대 화성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사항임
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수 정 안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8. 소수 의견 요 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